

8. 住宅建設促進法施行規則中 改正令(案) 立法豫告

建設部公告 제1992-67호 1992. 6. 13

1. 개정의 주요내용 및 취지:가입일로부터 2년이상인 경과한 청약저축의 이율을 현행 8%에서 10%로 인상함으로써 청약저축과 같은 성격의 예금인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장기가입자를 우대하고자 함.
2. 의견제출:이 법령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2년 7월 3일까

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(16절지 세워서 작성)를 건설부장관(참조:주택국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여부와 그 사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명), 주소

자연속의 신도시 꿈이있는 미래도시